

『국민의 정부』 2년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국민의 정부 2주년을 맞이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과제로 첫째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2년 3월말까지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초과액('99년 6월 현재 13.6조원)을 해소토록 하며, 채무보증잔액('99년말 현재 4.3조원)도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독려하고 교차보증 등 탈법적인 채무보증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이다. 또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 공시내용과 공정위 내부거래 DB 등 각종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엄격한 기업결합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자본금, 사무실, 인력기준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의약품·주류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과 통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을 개선토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대기업에서 분사화된 기업에 대한 감시(위장계열사 여부, 모기업의 지원여부 등)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와 벤처기업간 R&D협력사업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정해 준다. 또 하도급거래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하도급대금 구매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방송 program 제작, 광고 제작,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요정보 공개대상 확대(예:예식장, 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업 등),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체인점·대리점 모집,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직권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업자, 제조업자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판매방해행위를 규제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구축하여 소비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동호인 그룹을 적극 활용하거나 「전자상거래감시반」을 설치·운영하여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방지도모할 계획이다. 여섯째, 세계경제 통합추세에 따른 경쟁법 적용영역을 확대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반경쟁행위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외국기업 간 합병의 신고 및 심사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고,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2000년 주요 직권조사 계획

■ 부당내부거래행위

- 30대 기업집단 중 부당지원 혐의가 큰 기업집단
- 분사기업(551개)의 위장계열사 여부 및 부당지원 수혜여부

■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 600개 시공·납품업체 서면조사 후 범위반 혐의가 큰 10개 내외의 공기업

■ 담합행위

- 규제가 정비 완료된 60여개 사업자단체
- 자동차 보험요율,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보수카르텔

• 정부위탁업무 수행관련 담합행위

- 67개 단체의 단체표준인증 관련
- 22개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 신고업무 관련

• 경쟁사업자 감소로 담합이 용이하게 된 자동차 분야, 서민생활과 물가에 직결되는 목욕료, 이발료, 미용료 등 서비스분야

■ 불공정 하도급관행 : 2만개 업체 서면조사(2000. 4~9)

■ 백화점, 대형할인점(2차례 조사)

- 경품·광고비용 납품업체 전가, 판촉사원 파견강요, 부당반품 등

■ 부당광고행위

- 체인점, 대리점모집,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피해 빈번한 분야

지주회사 설립동향

지난 3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개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다수의 기업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로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키로 한 이래 최초로 설립

신고한 조선무역(주)의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와 SK그룹이 설립한 SK엔론(주)가 있으며, 삼성물산도 분사화를 통해 2005년까지 100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금융지주회사로는 동양그룹이 보유중인 제2금융권 금융계열사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빛은행과 외환은행 등도 금융지

주회사의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효율성 제고, 외자유치, 전략산업으로의 집중 등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도입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체계의 활발한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립심사를 신속히 완료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

▣ 지주회사 설립신고 개요

조선무역(주)는 2000년 2월 24일 9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인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을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조선무역(주)는 당초 봉제완구 도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최근 방송·통신분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하여 9개의 서울·경기지역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하고,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2000년 1월 25일 9개 케이블방송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 지주회사의 개요

- 재무상황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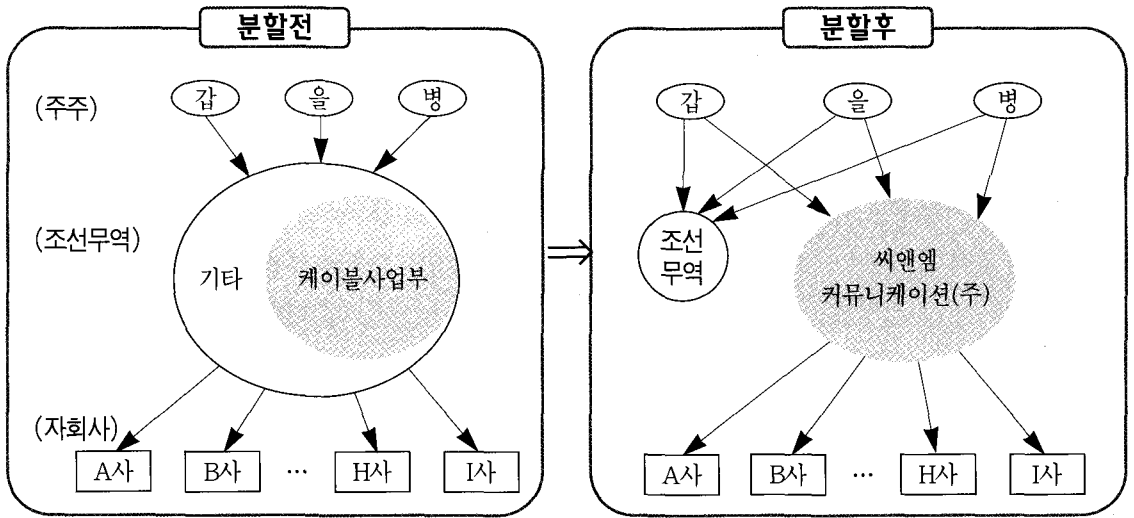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C)	자회사주식가액 합계액(D)	지주비율 (D/A)	부채비율 (B/C)
673.8	325.1	348.7	663.4	98.5	93.2

- 자회사 현황 : 서울·경기지역 케이블방송사 9개이며 모두 비상장회사임(한국케이블티브이 경동방송(주), 구로방송(주), 노원방송(주), 동부방송(주), 마포방송(주), 북부방송(주), (주)용산케이블티브이, (주)강동케이블티브이방송국, 동서울케이블티브이(주))

▣ 지주회사 설립방식

조선무역(주)는 회사분할을 통해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을 설립하였다.

회사분할방식을 이용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시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구성과 주주간 지분비율이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가 발생하나 상법상 감사인의 검사보고의무가 생략되어 설립절차가 간편한 특징이 있다. 동 건의 경우에도 조선무역(주)의 분할계획서 주총승인과 씨앤엠커뮤니케이션(주)의 설립등기가 모두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 공정위의 심사계획

씨엔엠커뮤니케이션(주)에 대하여는 부채비율 등 공정거래법상 설립요건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SK엔론(주)

▣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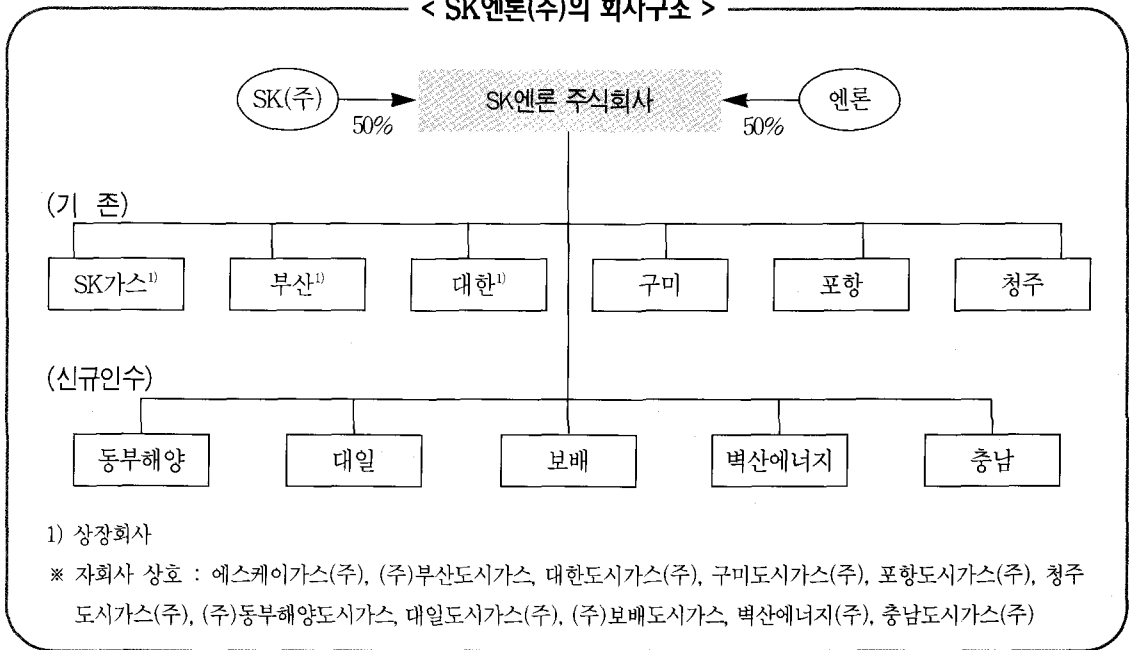
SK그룹은 2000년 3월 1일 현재 에너지, 화학, 통신, 금융·서비스 분야의 3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는 정유와 가스(LPG수입·판매, 도시가스 등)를 주축으로 하며, IMF 이후 외자유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으로 도시가스계열사 등을 지배하는 합작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 설립방식

SK(주)는 도시가스 등 6개 계열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엔론은 현금출자하여 1999년 1월 13일 SK엔론(주)를 설립하였다. 설립당시에는 SK엔론(주)의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미만이었으나 설립 이후 현금자산으로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매입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한편 5개사를 신규 인수함으로써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SK엔론(주)는 SK(주)와 엔론이 50: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선임 등 경영권도 양사가 공동행사하는데, 1999년 2월 계열편입하였고, 현재 총 1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외에 자회사간의 출자도 일부 있다.

< SK엔론(주)의 회사구조 >



□ 최근 동향

SK엔론(주)는 2000년 3월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를 하였는데, SK엔론(주)는 주식의 취득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며,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는 전환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양금융지주회사(가칭)

□ 설립배경

동양그룹은 전체 계열사 24개 중 8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양시멘트를 주축으로 동일인, 일부 금융계열사 등이 출자하여 전체 금융계열사를 소유·지배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금융사업부문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개별 금융계열사보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지주회사는 전략적 경영을 담당하고 자회사는 일상경영을 담당토록 하며, 자회사의 책임경영 강화 및 의사결정을 신속화하고, 외자유치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의 시멘트산업 불황에 대응하여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주식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하고자 한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

기본구도는 동양시멘트, 동양카드 등이 보유한 일부 금융계열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나머지 금융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 받아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1999년 11월 5일 동양시멘트, 동양카드 등이 보유중인 동양종금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동양금융지주회사(가칭)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11월 29일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감정인의 현물출자 평가 완료), 12월에 동양카드의 출자에 관하여 금감위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금감위 인가 후 공정위에 설립신고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99년 직권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서면실태조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총 3,000개 업체(원사업자 1,000개, 수급사업자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었던 원사업자 79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직권조사 및 시정지도를 통해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확인조사 결과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364개 업체에 대하여 522억 원의 범위반 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함으로써 12,465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서면실태조사기간 중 미지급한 대금을 자진 지급하는 등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확인작업 결과 총 635개 업체의 범위반 사실(위반행위 건수 : 1,385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

◆ 범위반 유형별 내역 ◆

(건, %)

위반 행위 계	대금지급관련 (어음할인료·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 물가변동미조정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미교부 및 미보존, 검사결과 서면 미통지	내국 신용장 미개설	수령거부 및 발주취소	물품 구입 강제	부당한 결제청구, 부당반품등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1,385	505	24	677	4	85	3	3	84
100.0	36.5	1.7	48.9	0.3	6.1	0.2	0.2	6.1

법위반 금액 내역(364개 업체, 52,177백만원)을 살펴보면,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액은 51,316백만원, 선급금 미지급 및 물가변동 미조정금액이 861백만원이며, 349개 원사업자는 법위반 금액 49,508백만원을 자진 지급하였고(해당 수급사업자 수 : 12,465개 업체),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가 조사대상업체 선정시 현장조사방식에 비해 더 폭넓은 업체선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됨으로써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방지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에는 주로 원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선급금 미지급 등 대금위주로 조사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대금을 조사기간 중에 자진지급하는 등 법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 되었다. 즉 제조업체 및 중견건설업체

도 조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하도급 법령 및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법위반을 자진시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발생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방식보다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대규모 직권 조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신고사건처리위주방식에서 대규모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방식으로 전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의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를 1999년도의 3,000개 업체에서 20,000개 업체로 대폭 확대(원사업자 4,000개, 수급사업자 16,000개)하고,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원사업자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답변 내용을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조사결과를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에 입력·관리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시정조치 유형별 업체 명단(현장조사) ◆

구 분		시정조치 대상업체
시정명령 (7개 업체)	제조(6)	해태음료(주), (주)한양공영, (주)노비타, 경신공업(주), 대영전자공업(주), 한국텔레이(주)<구 대우기전공업(주)>
	건설(1)	신세대건설(주)
경 고 (49개 업체)	제조 (19)	(주)왕별, 일신방직(주), (주)범양사, (주)대하패션, (주)쌍용정공, (주)우림전자, (주)금강, 한일단조공업(주), (주)로움코리아, 대우자동차(주), 삼성상용차(주), 성우정공(주), (주)대우, (주)센츄리, (주)성철사, 대성전선(주), 대우전자(주), (주)두산, 대원산업(주)
	건설 (30)	대원종합건설(주), (주)국제종합토건, (주)진도, 경림종합건설(주), 동원개발(주), 대지종합건설(주), 대산건설(주), 동원건설(주), 서해종합건설(주), (주)대아건설, 태평양개발(주), (주)신도종합건설, 영동건설(주), 삼림종합건설(주), 한국건설(주), (주)서한, 진흥기업(주), 우림건설(주), 성우종합건설(주), 일신건영(주), (주)삼천리M&C, 대림종합건설(주), (주)삼보종합건설, 삼호건설(주), (주)호반건설, (주)대원, 강남건영(주), 우신건설(주), 임광토건(주), 남광토건(주),

제2회 경쟁정책 워크샵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6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공정위 직원과 호주 및 대만의 경쟁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쟁정책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샵은 공정위 직원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와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경쟁법 집행의 핵심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결합 및 카르텔 조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 및 실제로 집행된 사례에 대한 토론이 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워크샵의 강사들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실무 담당자와 경쟁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강사 가운데 글로프 검사는 세계 최대의 경쟁법 위반 벌금(8억 7천만 달러)사례였던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미 법무부의 수석검사이며, 조지워싱턴대의 윌리엄 코바식 교수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는 호주와 대만의 경쟁당국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경쟁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3월 13일에 있었던 기업결합 관련 논의에서 코바식(William Kovacic) 교수는 기업결합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목적이 변천되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기업결합 정책은 1890년 셔먼법 제정 이후 60년이 지난 1950년대에 와서 틀이 잡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 FTC의 기업결합정책은 1970년대는 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HSR(Hart-Scott-Radino)법 도입(1976년)으로 사전신고제가 정착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완화(심사대상을 시장점유율 8%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여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추세였다면, 1990년대에는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 증대를 위한 합병이 1980년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수석합병심사관인 아이젠스타트(Philip M. Eisenstat)는 구체적인 합병심사 과정에 대하여 첫째, 사전신고를 통해 관련기업으로부터 주요 정보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경쟁 관계자료를 확보(서류(자료) 확보), 둘째, 관련 제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관계자를 불러 많은 질문을 하고 허위자료 제출시 제재 가능(면접질문), 셋째, 대체가능한 제품 존재여부, 신규진입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고객에 대한 조사), 넷째,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관련, 경쟁자에 대한 조사(경쟁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타 자료로 사업자 단체, 관련산업 발간물 등을 제출케 하여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국제카르텔 조사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글로프(Greg Gloff) 검사는 미국의 경우에도 카르텔 조사의 증거 확보가 가장 어려우며 내부 제보자에 대한 관용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이 카르텔 적발에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도 내부 공모자인 프랑스 기업의 제보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카르텔 참가자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경우 동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인 카르텔 관용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미 법무부의 경우 전체 카르텔의 10% 이상이 동 프로그램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햄버거·피자·치킨·제과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표준약관의 제정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관행의 미성숙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증가하고 있고 표면화되지 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현재의 잘못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장래 가맹점 및 소비자의 피해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IMF 이후 퇴직자와 주부에 의한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신규 창업이 용이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다급한 사정 및 계약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용하여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맹비나 계약금 등을 노린 사기성 사업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어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심사하여 표준약관에 제정하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납입한 가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금 불반환 조항, 가맹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원·부자재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부자재 구입강제조항, 가맹점의 설비공사를 반드시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에 의뢰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계약해제, 해지권 행사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계약해지권조항 등 현재 관련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계약조항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나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하반기에 동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2000년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3월 2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

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과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2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9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5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3월 2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2000년 2월 1일 573개사에서 577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6개사가 순증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2개사가 순감하였다.

◆ 2000년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2.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3.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기타	계		
전 체	573	3	6	-	9	3	1	-	1	5	4	573
1~5대	166	2	5	-	7	-	-	-	1	1	6	172
6~30대	407	1	1	-	2	3	1	-	-	4	△2	405

◆ 2000년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6, 회사설립 3)
- 제외 : 5개사(합병 3, 지분매각 1, 친족분리 1)

구 분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현대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지분취득	-	-	-	2
	(주)현대오토넷	자동차부품 제조업	회사설립	-	-	-	
L G	-	-	-	엘지창업투자(주)	기타 금융업	친족분리	△1
S K	(주)아이윙즈	S/W개발 및 판매업	회사설립	-	-	-	5
	벽산에너지(주)	전기 및 중기 생산·판매업	지분취득	-	-	-	
	(주)보배도시가스	도시가스공급업	지분취득	-	-	-	
	대일도시가스(주)	도시가스공급업	지분취득	-	-	-	
	(주)동부해양 도시가스	도시가스공급업	지분취득	-	-	-	
한 화	(주)동양백화점	백화점업	지분취득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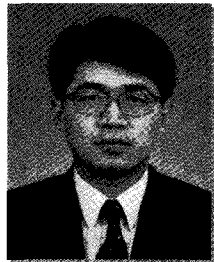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예 부	-	-	-	(주)동부고속	고속버스, 화물운송업	동부건설(주)에 합병	△2
	-	-	-	삼산주택(주)	건설업	동부건설(주)에 합병	
예 양	(주)은게임 네트워크	S/W개발 및 판매업	회사설립	-	-	-	1
진 로	-	-	-	진로쿠어스맥(주)	맥주제조판매업	지분매각	△1
제 일 제 당	-	-	-	(주)제주개발공사	건설업	씨제이개발(주)에 합병	△1
계	9			5			4

회원사 소식

신규 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김 인 섭
법 무 서 비 스 업
강남구 역삼동 647-15



변호사조상희사무소
대표 조 상 희
법 률 서 비 스 업
서초구 서초동 1573-1